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2010. 3. 10. 개정 2012. 12. 10. 개정 2013. 7. 24. 개정 2013. 12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96조 및 「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장」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 12. 10.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- 제3조(지원대학) 지원대학은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(지원자격) 공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 "지원자" 라 한다)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.7 (B⁻)이상, 대학원과정은 3.3(B⁺) 이상인 자로 한다.
- 제5조(수학신청)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부장・학과장에게 제출한다.
 - 1. 수학신청원 [별지 제1호 서식]
 - 2. 지도교수 추천서
 - ② 소속 학부(과)장은 수학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학장에게 수학을 신청한다.
 - ③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.
- 제6조(수학허가) 수학허가는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. 외국대학 수학추천서는 [별지 제2호 서식]과 같다. (서식 신설 2012. 12. 10.)
- 제7조(등록 및 학기의 인정)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생 교환협정으로 정한다. 다만,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는 그 수학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학생교환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한 등록 및 수학기간은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, 등록학기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(교과목의 이수)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- 제9조(수학신청의 취소) ① 수학신청의 취소(계절수업 수학 취소 포함)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부·학과장에게 제출하고, 학장의 취소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0조(취득학점)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,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 학점 이내로 하며,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. (개정 2012. 12. 10.)
 - ② 서울대학교와 외국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(과)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 내로 한다. (개정 2012. 12. 10.)
 - ③ 외국어 관련 수강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. (신설 2013. 7. 24.)
- 제11조(수학기간)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 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- 제12조(학점의 인정 기준) ① 공과대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 다만,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 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. (개정 2012. 12. 10, 2013. 12. 1.)
 -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,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.
 -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-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- **제13조**(학점인정 절차)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 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한다.

② 공과대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 (개정 2012. 12. 10, 2013. 12. 1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수학이 허가된 자는 서울대학교특별생수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12. 12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7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0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2013학년도 국외수학 승인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3. 12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